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2008 ~
번호	2006 ~

제출일자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감면 추징 제외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가 따로 운용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초 취지 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제2항제2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 감면
- 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 (안 제12조의2제2항)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

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제132조 제5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조례 제28조제1항 삭제
- 마.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명확화
 - (안 제7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5조의4제3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7조제3호)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삭제 (안 제10조제4호)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 → 임대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 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조문 수정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rightarrow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안 제12조)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안 제15조의4제3호)
- 주거용 부동산 → 주택 (안 제17조)
 -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9조)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업무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21조)
 -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의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31조, 부칙 제3항(경과조치)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주택법」 제2조제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향교재산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8. ~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대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4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9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행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및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 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 자. 직계존 · 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 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 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 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 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 ~ 4. (생

략)

혀	히
Ϋ́7	٧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 우자, 장애인의 직계존 •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 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 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1. ~ 4. (생 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 1. ~ 2. (생략)
-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 4. ~ 7. (생략)

개 정 안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
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
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국토해양부</u>

4. ~ 7. (현행과 같음)

쳙 했 개 정 안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본문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4. <삭 제> 개발사업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개 정 안 1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 (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 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여게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혂 했 개 정 안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 국토해양부장관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	
(<u>주거용 부동산</u> 을 제외한다)에 대하	(<u>주택</u>)
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	
를 경감한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산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	
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u>「물류정책기본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u>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u>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제 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 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하하다.